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8 선고 2019나79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9. 8 선고 2019나79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가소68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변론 종결 2020. 8. 18.

판결 선고 2020. 9. 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가소 68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 제5조(건축물 4동에 대하여는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는다)에서 민원제기를 제한한 범위에는 건축물 4동 지붕 위의 태양광 설비도 포함되는 것인데(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가 태양광 설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2) 피고는 2019. 8. 원고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건축물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 제5조를 위반하였으므로(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서 '태양광설비는 A주식회사가 신청할 때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신청을 한다고 통지한다. 신청한 사실을 신청과 동시 통지하지 않을시 태양광 사업을 절대 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1조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내가 태양광 할 때는 신청할 때 꼭 한번 할게요. 약속을 만약에 통보를 안 하면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걸로 할게요"라고 약속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의 민원제기 금지 규정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민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한 이후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그에 관한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행심 C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신청 반려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 절차에 2019. 8.경 D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일동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문제되는 건물이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서 정한 건물 4동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건축허가 신청은 합의서 작성 후인 2019년도 봄 무렵 원고가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른 창고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경진

판사윤영수

판사홍유정